

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바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04 - 1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4. 1. 8. 제안자 : 김정희 의원 외 4명
--

<p>개정이유</p> <p>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, 보조 활동비는 신설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</p>
<p>주요골자</p> <p>의정활동비 월 550,000원 월 900,000원으로 인상(안 제6조) 보조 활동비 신설 월 200,000원(안 제6조)</p>
<p>개정근거</p> <p>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</p>

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의정활동 회기수당지급기준)중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는 월 900,000원으로 한다.
2. 보조 활동비는 월 200,000원으로 한다.

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의정활동·회기수당지급기준) 의정 활동비는 월 550,000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신설</u></p> <p><u>1.</u></p> <p><u>2.</u></p> <p><u>신설</u></p>	<p><u>제6조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지급기준) 본문 삭제</u></p> <p><u>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.</u></p> <p><u>1.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2. 보조 활동비는 월 200,00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<u>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원을 지급한다.</u></p>